

평택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 단지내 상가
PREMIUM 6

-  1,296세대 대단지 **안정적인 고정수요**
-  약 23만m² 석정근린공원 **공세권 상가**
-  인근 아파트 및 주택·빌라 등 **풍부한 배후수요**
-  고정수요 대비 **낮은 점포비율 (10호실)**
-  접근성이 뛰어난 **1층 스트리트형 상가**
-  검증된 가치의 **프리미엄 브랜드**



* 상기 투시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건물의 색채 및 외부상세 등의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NAVER 평택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

80m²A·B/84m²A·B·C·D/110m² 총 1,296세대
근린생활시설 총 10개 호실

분양문의
031) **651.9883**

시행위탁사: 평택석정파크드림(주) 시행수탁사: 하나자산신탁 시공사: HS화성(주), 공급위치: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산 12-5번지 일원, 용도: 공동주택 * 주택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3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평택시청, 2022·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7, 2022.09.02)을 득하였습니다. * 사업대지면적 50,751.00m², 연면적은 216,225.8324 m², 용적률은 287.65%입니다. * 공급규모는 공동주택(지하 4층, 지상 29층 1,29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입니다. * 상기개요는 사업계획변경승인(2022.09.02)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상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및 그림, CG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활용 또는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분양사무실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본 홍보물에 기재된 개발계획 등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 사업주체와는 무관함을 안내드립니다. * 본 홍보물은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3만m² 공원을 품은 1,296세대 대단지 상가
평택석정공원 | 화성파크드림
단지내 상가분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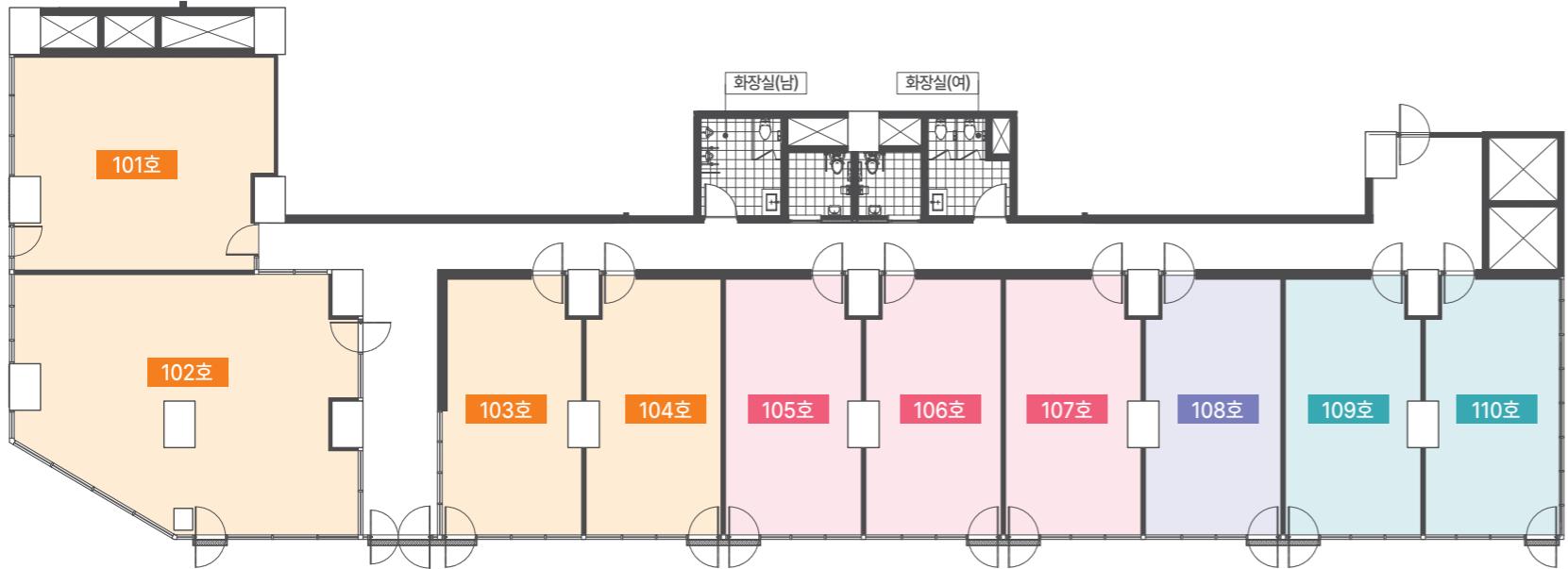
**2025년 6월 12일
입찰 예정**



1,296세대 대단지와 공원의 독보적 수요를 품은 프리미엄 상가

단 10호실, 1,296세대
대단지 수요를 독점하는 상가!

■ 상가 평면도



* 상가 이미지 및 상가도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분양사무실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는 실제로 도로에 면한 1층이나 공부상 지하로 표기되며 입찰자는 현장 및 설계도서를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상가 면적표

구분	호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지정업종
근린생활시설	101호	60.2570	67.8148	128.0718	30.0604	F & B
	102호	87.7226	98.7232	186.4458	43.7612	F & B
	103호	38.9725	43.8596	82.8321	19.4418	F & B
	104호	38.2500	43.0465	81.2965	19.0813	F & B
	105호	38.2500	43.0465	81.2965	19.0813	서비스 & 리테일
	106호	38.2500	43.0465	81.2965	19.0813	서비스 & 리테일
	107호	38.2500	43.0465	81.2965	19.0813	서비스 & 리테일
	108호	38.2500	43.0465	81.2965	19.0813	부동산중개업소
	109호	38.2500	43.0465	81.2965	19.0813	편의점
	110호	37.6550	42.3769	80.0319	18.7845	

* 계약자는 입찰 및 계약체결 전 상가 등 호수의 위치 및 면적을 확인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입찰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상가의 용도는 주택법시행령 제7조 1호와 2호의 근린생활시설을 참조하되 건축법등 관계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지정된 업종으로 하여 이에 따라 영업해야 합니다.

* F&B는 'Food & Bakery'이며 아래 관련 업종을 확인 바랍니다.

권장 업종

■ F&B업종

카페, 제과 및 디저트, 분식, 치킨,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샐러드, 건강식, 버거, 기타 등(투썸플레이스, 이디야, 메가카피, 설빙,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BBQ, 교촌치킨, bhc, 노랑통닭, 본죽&비빔밥, 국수나무, 한솔도시락, 김밥천국, 홍콩반점, 차이나팩토리, 미쟝국수, 뜨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미소야, 후쿠오카햄버그, 돈까스클럽, 놀부부대찌개, 샐러디, 프레시코드, 포케레이디 등)

■ 서비스&리테일업종

세탁소, 미용실, 네일샵, 안경점, 반려동물 관리샵, 피트니스, 교습소, 핸드폰판매, 키즈관련, 무인판매점 등(크린토피아, 월드크리닝, 워시엔조이(셀프빨래방), 이찰헤어커커, 준오헤어, 박승철헤어스튜디오 데싱다비, 티티네일, 스윗네일, 잉글리시에그, 눈높이, 개별교습소, 짐보리, 빠르로키즈카페, 베이비엔젤, 피트니스팩토리, GYM BOX, 365휘트니스, 명명샵, 냉면이유치원, 애견미용실, 문구점, 통신사대리점)



* 상가 광역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개발계획(예정)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언론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및 기타 관계기관의 사업 추진 중 일부 변경, 지역, 취소될 수 있습니다.

